

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단체명	사업자등록번호	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전화번호		
사무소 소재지				

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2조의4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11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8제1항·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정관(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·조직·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.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·학력·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나.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3.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가. 교육과정 편성표(교육내용을 포함합니다) 나.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규정 다.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사업자등록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